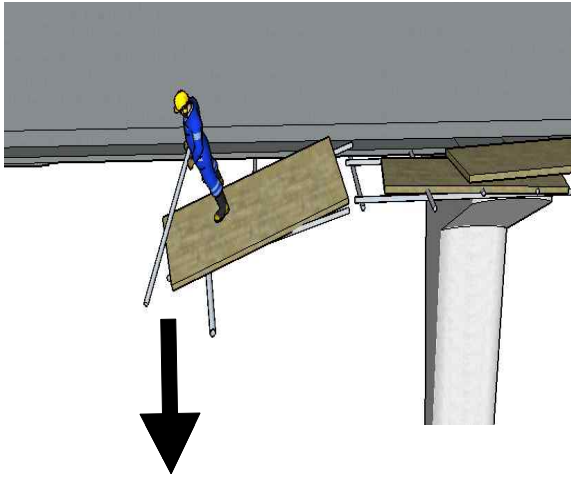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18.7.22(일) 경북 영주시 평은면 소재 평은리교 이설공사 현장에서 ○○○ 소속 작업자(비계공)가 교량 슬래브 하부 방호선반 해체작업을 하다가 발판을 지지하는 브라켓이 꺾이면서 발판과 함께 약 20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떨어짐 방호조치 미실시
 - (클램프 미고정) 강관파이프의 교차부에 클램프를 사용하여 강관파이프를 단단하게 고정을 하여야 하나 미고정
 - (지지물 미고정) 강관파이프 위에 작업발판(합판) 설치시 둘 이상의 지지물에 미고정
 - (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) 방호선반 위에서 해체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



재해 예방 대책

- 떨어짐 방지조치 철저
 - 지상 20m 높이에서 방호선반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강관파이프의 교차부에 클램프를 사용하여 강관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
 - 강관파이프위에 작업발판(합판)을 설치할 경우 뒤집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
 - 높이 20m의 방호선반 위에서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의 걸고리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실시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